

■ 법률 칼럼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신청 시 주의 사항

1. 직종의 전문성

H1-B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USCIS (이민국)가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단순한 학사 학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H-1B 관련 규정은 신청인이 일하게 될 직종/직업이 반드시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종이란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통해 얻어진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그 직업의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직업/직종입니다. 그러므로 H1-B 신청을 위한 직종을 선정할 때 반드시 신청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직종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종이 반드시 그 학사 전공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학 학사를 가진 분이 accounting manager로 지원하는 경우 accounting manger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이고 회계학 학사 전공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잘 선정된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책정

행정향소국(AAO)의 결정을 통하여 낮은 Level의 임금 수준과 그 직종의 전문성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민국이 임금 책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금을 책정할 때에는 미국 노동청 등에서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Wage Library 또는 Occupational Handbook 등을 상세하게 참고하여 어떤 Level로 임금을 정할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고임금 직종을 선호하는 이민국의 경향을 고려할 때 주의가 요청되는 대목입니다.

3. 고용주의 지불 능력

과거에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 이민의 경우와 달리 H1-B의 경우에 고용주의 지불 능력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

았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고용인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으면 통상적으로 임금 지불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민국은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에 앞서서 고용주 회사의 재정 상태 또한 잘 점검해야 합니다.

4. 학력 인증/졸업 학교의 인가 문제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학사 이상의 학위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취득된 경우는 반드시 미국 학력 인증 기관을 통하여 신청인의 학위가 미국 대학의 학사학위에 준한다는 인증서(Credential Evaluation)를 반드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도 미국 교육부 인가(Accreditation)를 받은 학교인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5. 미국 밖에 있는 인력에 대한 H-1B 신청

해외공관에서 H-1B 비이민비자 발급에 대한 제한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곧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한 H-1B 신분 획득한 작년에도 제한이 없었고 현재에도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6. 사전 전자 등록 실시

3월9일-25일 기간 동안 등록하고 추첨을 한 후에 추첨에서 뽑힌 분들만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4월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90일 이내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치과 임플란트 치료 과정과 기간

▶ 1357호에서 이어집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시작된 시기부터 시행되어 왔던 방법을 살펴보면 일단 임플란트 식립 후 이 임플란트를 잇몸 아래에 묻어두어 3~6개월을 기다립니다.

이후 간단한 2차 수술을 통해 잇몸을 절개한 후 임플란트 위에 원통형의 구조물을 부착하여 주위 연조직의 치유를 유도하고 수 주 후에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 제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식립 시 삽입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 정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원통형의 구조물을 동시에 부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2차 수술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료 기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심미성을 요하는 부위나 특별한 경우 임플란트 식립 후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기도 하면서 1시간 내 치아 완성 (Tooth in an hour)이라는 표제 하에 시행되고 있지만 자세한 검사를 통해 가능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세한 검사와 철저한 치료 계획하에 시행된 시술의 경우 실패율이 통상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높은 실패율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 최종 보철물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주변 조직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작하여 삽입됩니다.

필자도 즉시 임플란트 크라운 수복을 시행하고 있던 하지만 실패율이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해서 실패율이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

어 환자들의 동의 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시 수복은 단단히 임플란트가 고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전에 즉시 수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이 시술법은 임플란트 수술에 충분한 경험이 있어서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식립 고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술자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가 실패할 확률이 높더라도 90% 정도는 성공 가능하다고 하니 즉시 임플란트 수복을 생각해 보겠다 하면 시술자가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지 알아보는 게 현명하다고 하겠습

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시술을 받았다고 하면서 화두로 삼기도 할 것입니다. “누구는 몇 달 만에 치료가 다 끝났다”, “누구는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끝났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어느 병원에서는 얼마 만에 다 끝내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냐.” 등등 많은 얘기를 듣게 되는데 사실 치료 기간은 치료 받을 부위의 상태와 조건, 저작 방법,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 (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